제1620호
2019. 9. 26.(목)

발 행 인 : 동 작 구 청 장 이 창 우
편 집 인 : 홍보전산과장 김 미 자

전 화 : 820-1458
F A X : 820-9996

선 람	기관의 장

동 작 구 보

차 례

◎ 고 시
제2019-77호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1
◎ 공 고
제2019-1068호 : 자동차관리법 위반 차량에 대한 운행정지명령 공고---------- 2
제2019-1070호 :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2019-1078호 : 이행강제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통지 공시송달 공고---------- 5
제2019-1079호 : 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7
제2019-1081호 : 구립동작종합사회복지관 위탁 운영법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고----- 10
제2019-1083호 : 동작청년 스타트업「커리어메이킹」사업 민간위탁기관 선정결과 공고---------- 10
제2019-1083호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변경)에 따른 행정예고---------- 11
◎ 인사발령 ---------- 14

공 람														

1.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구보는 공문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동 작 구

고 시

◈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시 제 2019 - 77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서울특별시 동작구고시 제2016-29호(2016. 3.31.)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되고, 서울특별시 동작구고시 제2016-73호(2016. 9.29.), 제2018-64호(2018.8.23.), 제2018-79호(2018.10.04.), 제2019-14호(2019.02.21.), 제2019-41호(2019. 5.30.), 제2019-49호(2019. 6.27.)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가된『노량진 철도횡단지하보도 개설공사』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제9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97조·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을 변경인가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26일

동 작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없음)

- 노량진동42-18 ~ 16-3간 도로(입체결정 및 기존 지하보도 출입구 신설 포함)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 명칭 : 노량진 철도횡단지하보도 개설공사
  (노량진 드림스퀘어복합빌딩 신축관련 지하횡단보도 개설공사)

다. 규모(변경없음)

- 도로(지하보도)개설 : 폭 6m ~ 9m, 길이 75m
- 도로(입체결정) : 폭 6m ~ 9m, 길이 30m

라. 시행자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구 분	법인소재지	법인명칭(대표자성명)
사업시행자	서울시 동작구 노들로2길 9-3외 10필지(노량진동)	드림스퀘어(김현숙 외 106명)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 예정일(변경)

- (기정) 2017. 3. 1. ~ 2019. 9.30.(31개월)
- (변경) 2017. 3. 1. ~ 2020. 2.29.(36개월)

바. 공공시설 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새로이 설치하는 도로에 대해 도로관리청(동작구청)에 기부채납
- 건물 내 입체결정 부분은 건축물 준공 전까지 저촉 토지부분에 대해 구분 지상권 설정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작구청 도시계획과(☎02-820-9596) 또는 드림스퀘어(☎02-792-065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 고

◈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 2019 - 1068호

자동차관리법 위반 차량에 대한 운행정지명령 공고

불법명의자동차(속칭 대포차) 소유자의 자동차 운행정지 요청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운행정지명령 대상 자동차의 확인)에 의거하여 운행정지명령이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 운행정지 등)제3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26일

동 작 구 청 장

1. **제 목 :** 자동차관리법 위반 차량에 대한 운행정지명령 공고

2. **공고기간 :** 2019. 9. 26. ~ 10. 10.

3. **공고대상 :** 불법명의 차량 1대

연번	자동차등록번호	자동차명	소유자명	운행정지 명령사유
1	41고2227	BMW X6 xDrive30d	최*성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3조제4항제4호
2	86로1962	메가트럭	백*운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3조제4항제4호

4. **공고장소 :** 동작구 구보, 게시판 및 홈페이지

5. **공고내용**

가. 자동차 소유자가 아닌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동법 제24조의2제6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에 따라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으며, 동법 제81조 제7의2호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나. 운행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해당 자동차를 계속 운행하는 경우 동법 제13조제3항제3호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될 수 있으며, 직권으로 말소등록 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동법 제80조제1호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다. 동법 제24조의2제4항에 따라 운행정지를 명령한 자동차에 지방세 등 체납금 환수를 위해 우리구청에서 공매를 할 수 있습니다.

6. **문의사항 :** 동작구청 교통행정과(☎820-9883)

◈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 2019 - 1070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9월 26일

동 작 구 청 장

1. 개정이유

동작구 통합관리기금의 존속기한 만료일이 도래하여「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제3항에 따라 5년 범위 내에서 기금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통합관리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안 제4조)

1) 존속기한 5년 → 존속기한 2024년 12월 31일

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변경 및 띄어쓰기 수정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참조:기획예산과, 주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4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기획예산과 예산팀(전화: 02-820-9350, FAX: 820-9997, E-mail : moon2015@dongjak.go.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조례안은 동작구청 홈페이지 (http://www.dongjak.go.kr) “행정정보-법률·위원회정보-입법예고”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 호

이 개정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의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성별”을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성별균형”으로 한다.

제10조제6항 중 “범위 내”를 “범위”로 한다.

제17조 중 “「서울특별시동작구재무회계규칙」”을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무회계 규칙」”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통합관리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으로 한다. ② (생 략)	제4조(통합관리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의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성별균형----------.
②·③(생 략)	②·③(현행과 같음)
제10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 ⑤ (생 략) ⑥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범위----------
제1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서울특별시동작구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7조(준용)----------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무회계 규칙」----------.

◈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 2019 - 1078호

이행강제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통지 공시송달 공고

관내 건축물 소유자에게 건축과-19054(2019.9.3.)호로 이행강제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2019년 9월 26일

동 작 구 청 장

【공시송달 내용】

1. 공고대상

연번	대지위치	소유자	위반내용	부과금액	과세일자	압류일자
1	흑석동 6*	유*식	허가받지않은면적 (위반면적 : 4.8 ㎡)	265,440원	2019.4.17	2019.8.29
2	신대방동 6*8-1*7	심*안	기타 (위반면적 : 66.12 ㎡)	132,240원	2019.4.17	2019.8.29
3	상도1동 8*2-2	한*빈	무단대수선 (위반면적 : 422.46 ㎡)	8,280,210원	2019.5.31	2019.8.29

2. 공고기간 : 2019. 9. 26. ~ 2019. 10. 10. (15일간)

3. 의견제출기한(부서명) : 2019. 10. 10.까지(동작구청 건축과)

4. 처분제목 : 이행강제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통지

5. 처분근거 :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6. 처분내용 :

상기 공고대상자가 소유·관리하고 계신 건축물의 위반 사항에 대하여 기한 내에 미시정되어 기예고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으나, 장기 체납되어 압류예고한 후 재산압류 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시송달함을 알려드립니다.

7.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가. 귀하는 상기 사항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서면 · 컴퓨터통신 또는 구술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컴퓨터 통신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우리구 건축과에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귀하께서 직접 출석하여 의견 진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리구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 2019 - 1079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9월 26일

동 작 구 청 장

1. 개정이유

출산지원금 지급대상자의 범위 및 지급신청 관련 조항을 명확화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사항 및 주민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출산지원금 지급대상자의 주민등록 거주 요건 미충족 시 별도 지급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산지원금 지급대상자 범위 및 지급신청 규정 명확화

- 신생아가 지급대상자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여야 함을 명시(안 제3조제1항)
- 부모를 부 또는 모로 명시(안 제3조제1항, 안 제4조제1항)

나. 주민등록 요건 미충족 시 별도 신청요건 조항 마련(안 제4조제2항)

다.「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참조 : 보육여성과, 주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별관3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어르신청소년과 어르신복지팀 (전화 : 820-1491, FAX : 820-9988, E-mail : roniron@dongjak.go.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 정보시스템 (http://law.dongjak.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 호

이 개정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부모로”를 “부 또는 모이며, 신생아는 지급대상자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이어야”로 한다.

같은 조 제2항 중 “자(이하 “보호자”라 한다)를” “사람(이하 “보호자”라 한다)을”로 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부모”를 “부 또는 모”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청인의 동작구 거주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신청 기한을 거주기간 6개월이 되는 날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가”를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반환하여야 할 자가”를 “반환하여야 할 사람이”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영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지급기준) 출산지원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첫째 아이는 30만원, 둘째 아이는 50만원, 셋째 아이는 100만원, 넷째 아이 이상은 200만원을 지급하되, 쌍생아 이상일 경우 출생 아이별로 각각 지급한다.	제2조(지급기준) ---------- **범위**----------.
제3조(지급대상자의 범위) ① 출산지원금의 지급대상자(이하 "지급대상자"라 한다)는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부모로** 한다.	제3조(지급대상자의 범위) ① ----------**부 또는 모이며, 신생아는 지급대상자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이어야**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사망, 이혼 등의 사유로 부모가 신생아를 양육하지 않을 경우에는 구에 대상 자녀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면서 신생아를 사실상 양육하고 있는 **자(이하 "보호자"라 한다)를** 지급대상자로 한다.	② ----------**사람(이하 "보호자"라 한다)을** ----------.
제4조(지급신청) ① 출산지원금 지급신청은 신생아의 부모(이하 "신청인"이라 한다)가 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경우 보호자가 신청인이 된다.	제4조(지급신청) ① ----------**부 또는 모**----------. ---, ----------.
② 지급대상자는 신생아 출생신고 후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거주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② 지급대상자는 ----------. **다만,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청인의 동작구 거주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신청 기한을 거주 기간 6개월이 되는 날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제7조(환수조치) ① 구청장은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전액 환수하여야 한다.	제7조(환수조치) ① -------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
② 제1항에 따라 출산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할 자가** 기간 내에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② ---------- **반환하여야 할 사람이** ----------.

◈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 2019 - 1081호

구립동작종합사회복지관 위탁 운영법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고

동작구 공고 제2019-867호와 관련하여「구립동작종합사회복지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심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26일

동 작 구 청 장

1. 심의일시 : 2019. 9. 19.(목) 15:00
2. 심의장소 : 동작구청 기획상황실
3. 심의결과

법 인 명	대표자	소 재 지	심의결과
사회복지법인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유경촌	서울시 중구 명동길 80	**선 정**

4. 공고기간 : 2019. 9. 24. ~ 10. 4.

◈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 2019 - 1083호

동작청년 스타트업「커리어메이킹」사업
민간위탁기관 선정결과 공고

동작청년 스타트업「커리어메이킹」사업의 민간위탁기관 선정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26일

동 작 구 청 장

선정결과

구 분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동작청년 스타트업 「커리어메이킹」	(주)플레이아카데미	지수현 양민희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25

◈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 2019 - 1085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변경)에 따른 행정예고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따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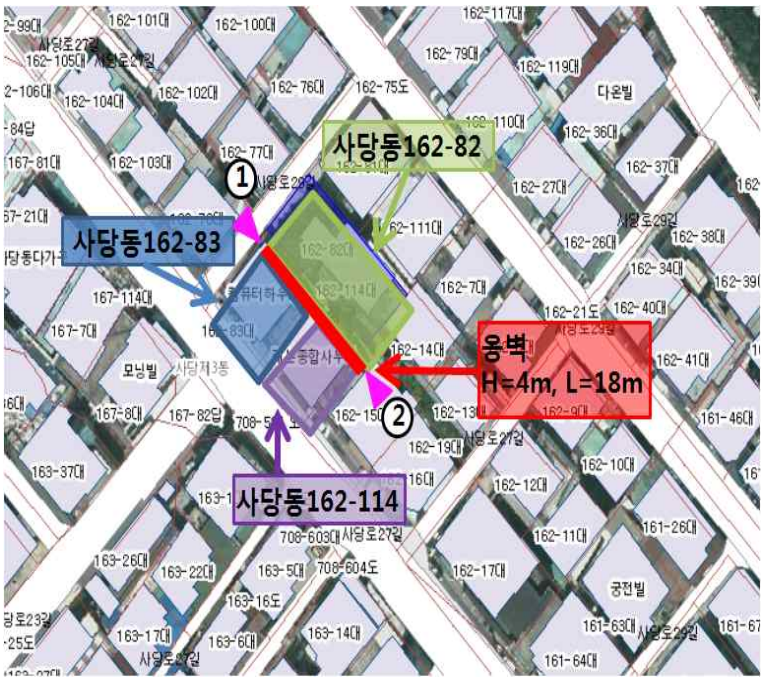
2019년 9월 26일

동 작 구 청 장

1. **목 적** : 급경사지 사면의 붕괴로 인하여 태풍, 집중호우 시 재산 및 인명피해, 기타 안전사고 우려가 높음에 따라 이 지역을 정비·관리하여 사면붕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함
2. **공 고 방 법** : 구보 및 동작구청 홈페이지 (http://www.dongjak.go.kr)
3. **행정예고기간** : 2019. 9. 26. ~ 2019. 10. 16.(20일 이상)
4. **의견제출기간** : 2019. 9. 26. ~ 2019. 10. 16.(20일 이상)
5. **의견제출**
   - 가. 위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단체 또는 기관은 의견서를 붙임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동작구청 건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출방법 : 팩스(02-820-9984) 및 우편(서울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동작구청 건축과)
   - 다. 제출기한 : 2019.10.16.일까지
     ※ 우편 또는 팩스 제출시 행정예고 기간내에 도착한 것에 한함.
   - 마. 문 의 처 : 동작구청 건축과(☎02-820-9824)
   - 바. 기타사항 :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6.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등급변경 대상지**

연번	시설유형	위 치	지정개요		지정 사유
			유형	등급	
1	옹벽 (석축)	사당3동162-82	붕괴위험	C→D*	붕괴위험지역 지정 관리 통한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 표시 : 붕괴시 인명피해 우려될 경우)



주변 지번 현황

①



②



현장사진

7. 붕괴위험지역에서 제한되는 행위 (행위 협의)

가. 토석의 굴착을 수반하는 관로의 설치, 철탑의 설치, 도로·교량 등 구조물의 설치 행위

나. 토석의 굴착을 수반하는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개축하는 행위

다. 옹벽·축대 및 측구 등을 변경하는 행위

라. 수목을 벌채하거나 잔디 등을 제거하는 행위

마. 그 밖에 급경사지의 안정을 저해하는 행위

8. 정비계획

가. 서울시 “재난취약시설 정밀안전진단 등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지로 선정시 정밀안전진단 실시

나.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제시된 보수·보강방안으로 소유자가 안전조치 실시

붙임 의견제출서 1부. 끝.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인사발령

[발령 제183호]

연번	성 명	발 령 사 항	현 직	
			부 서	직 급
1	송지연	복 직 을 명 함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전예고)	건 강 관 리 과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마급 (정 신 건 강 증 진)

2019.9.19.字.

[발령 제184호]

연번	성 명	발 령 사 항	현 직	
			부 서	직 급
1	**김 보 린**	지 방 행 정 서 기 보 에 임 함	대 방 동	지방행정서기보시보

2019. 9. 25. 字

[발령 제185호]

연번	성 명	발 령 사 항	현 직	
			부 서	직 급
1	**서 은 주**	원 에 의 하 여 그 직 을 면 함	부동산정보과	지 방 행 정 서 기 보 (시 간 선 택 제)

2019. 9. 26. 字.

[발령 제186호]

가. 의원면직

연번	성 명	발 령 사 항	현 직	
			부 서	직 급
1	홍성호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신대방제1동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마급 (운 전)

2019. 9. 26.字.

동작구보 제1620호 동작구



www.dongjak.go.kr

동 작 구